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2604
----------	-------------

제안연월일 : 2021년 9월 6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효율적인 노인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수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노인놀이터의 설치”를 삭제함.(안 제7조제1항제4호의2 삭제)
- 나.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2항 수정)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제4호의2 “노인놀이터의 설치”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의2에 따른 노인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의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인이 노인놀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을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건강증진)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5. ~ 8. (생략)</p> <p><u><신설></u></p>	<p>제7조(건강증진) ①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u>4의2. 노인놀이터의 설치</u></p> <p>5. ~ 8.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u>제4의2에 따른 노인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의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인이 노인놀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p>제7조(건강증진) ①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u>4의2. <삭제></u></p> <p>5. ~ 8.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u>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건강증진) (생 략)</p> <p style="margin-left: 20px;"><u><신 설></u></p>	<p>제7조(건강증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 <u>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노인이 접 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 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u></p>